

의안번호	제541호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자	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4월 11일

#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봉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1
----------	-----

발의연월일 : 2024년 4월 11일  
발 의 자 : 박봉순, 이상정, 김정일,  
안지윤, 안치영, 조성태,  
김성대

##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내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고 양성평등의 실현과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 3. 조례안 전문 : 붙임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비용추계 : 붙임
- 협 의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조례안 예고 : 예고 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고, 양성평등의 실현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2. “육아휴직 장려기업”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고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도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자 또는 육아휴직 장려기업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2.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3.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급대상)** ① 도지사는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내 거주하는 육아휴직자

2.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육아휴직 장려기업

②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하되, 충청북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대상·방법·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정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육아휴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 2.육아휴직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 3.육아휴직자 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전출 등의 사유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 4.그 밖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육아휴직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환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정지 사유 발생 이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지급 대상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출한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

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3.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양성
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6. 그 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향

②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26조(일·가정 양립지원)**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6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장·군수,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21조(경제활동 참여 및 일·가정 양립지원)**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의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여성의 일자리창출 지원 및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체계적 구축을 위하여 여성고용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일·가

정 양립에 관한 서비스 지원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내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며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맞돌봄 가족친화 기업문화 정착과 함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활동 인구 확충 기여

## 2. 비용 발생 요인

-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기업 및 휴직자 지원

## 3. 관련조문(안 제5조)

-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제5조제1호)
-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지원(제5조제2호)
-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제5조제3호)

##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도내 6개월이상 남성 육아휴직자 및 남성 육아휴직 장려기업 지원

나. 추계 결과

- 남성 육아휴직 장려기업 지원비 : 42,000천원
- 남성 육아휴직자 지원 : 18,000천원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상담, 교육, 홍보비 지원 : 5,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 및 시군 매칭 지원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6. 작성자 :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043-220-3910)

